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안년월일 : 2008. 2. 1.
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법적 간결성·합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2007년 5월 11일자 「지방자치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조항을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 오자 및 띄어쓰기를 정정하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- 가. 기존 법문장의 표기 중 복잡한 문장은 쉬운 우리말로 수정하고 국문법에 맞는 표기로 정정 (안 제13조, 제23조, 제41조, 제42조, 제52조, 제80조)
- 나.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른 우리 구의회 회의 규칙 관련 조항을 수정 (안 제1조, 제14조, 제70조, 제79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
- 나. 예산조치 :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(별첨)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칙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지방자치법 제63조”를 “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”로 한다.

제13조 제2항 중 “회기중에도 의결로서”를 “회기 중에도 의결로써”로 한다.

제14조 제2항 중 “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”을 “법 제63조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위원회에 있어서는”을 “위원회에서는”으로, “본회의에 있어서는”을 “본회의에서는”으로 한다.

제41조 제4항 “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”를 “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한다.”로 한다.

제42조 제1항과 같은 항 제3호 중 “수개”를 “여러 개”로 한다.

제52조 제2항 중 “1문 1답”을 “일문일답”으로 한다.

제70조 제1항 중 “법 제71조”를 “법 제79조”로 한다.

제79조 제1항 중 “법 제78조”를 “법 제86조”로, 같은 조 제3항 중 “법 제75조”를 “법 제83조”로 한다.

제80조 제1항과 제2항 중 “동조”를 “같은 조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 제63조</u> 등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-----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1조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13조(회기) ① (생략) ②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서 폐회할 수 있다.</p>	<p>제13조(회기) ① (현행과 같음) ②----- --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-----.</p>
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(생략) ②의장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<u>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55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</u>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③~④ (생략)</p>	<p>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(생략) ②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3조(변안) 변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,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변안할 수 없다.</p>	<p>제23조(변안) ----- ----- -----, 위원회에서는 ----- ----- ----- 본회의에서는 ----- ----- 위원회에서는 ----- -----.</p>

현행	개정안
<p>제41조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 ①~③ (생략)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.</p>	<p>제41조(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) ①~③ (현행과 같음) ④감표위원은 다른 의원의 투표가 모두 끝난 후에 투표한다.</p>
<p>제42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동일의제에 대하여 <u>수개의</u>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. 1~2 (생략) 3.의원의 수정안 <u>수개</u>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42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----- -- 여러 개----- -----. 1~2 (현행과 같음) 3.----- 여러 개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52조(위원의 발언) ①(생략) ②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<u>1문 1답</u> 방식으로 할 수 있다.</p>	<p>제52조(위원의 발언) ①(현행과 같음) ②----- <u>일문일답</u> ----- -----.</p>
<p>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의장은 <u>법 제71조</u>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, 또는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윤리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분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. ② (생략)</p>	<p>제70조(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) ①--- <u>법 제79조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
<p>제7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의장은 법 제 7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(이하 “징계대상자”라 한다)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.</p> <p>② (생략)</p> <p>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위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.</p> <p>④~⑤ (생략)</p>	<p>제79조(징계의 요구와 회부) ①----- 법 제 86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----- ----- ----- 법 제83조----- ----- -----.</p> <p>④~⑤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80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제 79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,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 시한 또한 같다.</p> <p>②제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 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,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 다만,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회의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.</p>	<p>제80조(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같은 조 ----- -----.</p> <p>②----- ----- 같은 조 ----- ----- -----.</p>